
학교 생활 규정

남원용성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남원용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가 지향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구현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여 자존감을 실현하고 인감답게 사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근거 및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체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2.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와 존중 받을 권리.

3.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권리.

4.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의 차이,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7.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범 받지 않을 권리.

8.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할 권리.

9.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제5조 【의무】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의무.
2.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할 의무.
3.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
4.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5.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할 의무.
6. 준법 정신을 갖고 법과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준수해야 할 의무,
7. 친구, 선후배를 존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8. 학교 생활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10.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 문화를 꾸려나가야 할 의무.
11.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 헐뜯는 등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3장 학생 생활

제6조 【기본 예절】

1. 항상 용의를 단정히 한다.
2. 욕설, 비속어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한다.
3.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선생님과 동급생, 선후배간에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다.
4.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교사의 지도에 긍정적으로 따른다.
5.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중도덕(실내, 복도, 계단에서 뛰거나 공놀이 하지 않기 등)을 잘 지킨다.
6.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필요시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7. 복도를 걸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정숙한 보행으로 우측 통행을 한다.
8. 학생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출입할 때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인쇄실, 직원 화장실, 보건실 등)
9. 외설적인 책, 사진, 영상을 제작, 게시 유포하지 않는다.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일자, 장소, 시간을 밝혀 담임교사나 학생안전정보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10. 교내·외의 모든 행사시에는 행사 질서를 지킨다.
11. 학생 서로 간에 어떤 물품이라도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불건전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 및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학년부장 담당교사, 기타 선생님들과 상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3. 타인을 위협, 폭행, 헐뜯 및 금품을 갈취하여서는 안 된다.
14. 학생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5. 다른 학급에 출입할 때에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제7조 【용의 복장 규정】

1. 학생은 두발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고데기,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열기구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교내 반입을 금한다.
2. 학생은 화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수업시간에 화장을 하거나 거울을 보지 않는다.
3. 등하교시 교복착용을 권장하되 자율적으로 입을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복을 입는다.
4. 일상복(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교내에서 입는 옷)의 색상과 디자인은 자유로 한다. 단,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5.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손톱과 발톱은 짧고 깨끗하게 하며 차분한 색상(누드톤)의 매니큐어를 허용한다.
6. 액세서리 착용은 허용하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7. 시력보정을 위한 서클렌즈 착용은 허용하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8조 【수업 및 근태】

1. 시작종이 나기 전 자리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한다.
2. 수업 시간에는 교사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3. 특별실 이동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는 교실 관리(정리정돈, 전등, 난방 장치, 시건 장치, 등)를 잘하여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참학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5. 시험기간 중에는 교무실 출입을 삼간다.
6. 각종 고사에 응하는 시험 자세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7. 결석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과 보호자의 연서로 결석계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보호자가 전화로 사유를 밝히고 결석 다음날 결석계를 제출한다.
8. 생리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될 수 있다.(단,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9.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등교하며 무단으로 지각, 결과, 외출, 조퇴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결과, 조퇴, 외출 시에는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제9조 【시설 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으며,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
4.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5.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6.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10조 【이성 교제】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이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 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폭력 등에 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 【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姓)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4.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조 【교외 생활】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중학생으로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다방, 유흥장, 전자오락실, 기타)에 가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불법 취업을 금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학생 서로 간에 상행위를 금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놀이(화투, 카드놀이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절도 및 갈취를 하지 않는다.
8. 흡연 또는 음주, 건강에 좋지 않은 약물 복용은 하지 않는다.
9. 보호자 허락 없이 가정을 떠나 등산, 캠핑, 외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하교 시 예정된 시간에 귀가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귀가 시간을 가정에 알리고 허락을 받도록 한다.
11.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신호등, 횡단 보도, 우측 통행) 길가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12. 등·하교 시 불량배에 의해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는 즉시 인근 파출소나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한다.

제15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장 정보 통신

제16조 【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17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등교 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하교 시에 나누어 준다. 단 필요로 하는 경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반납한다.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5장 남원용성중학교 학생회 규정

제1절 총칙

제18조 【명칭】 학생회는 학급 학생회, 전체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남원용성중학교 학급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 남원용성중학교 학생회 또는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19조 【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1조 【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둔다.

1. 학생총회
2. 대의원회
3. 학급자치회
4. 운영위원회
5. 동아리연합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제22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절 권한

제23조 【권한】

1.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3.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학교의 운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역할】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진한다.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생의 의견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한다.
4.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축제 및 학교 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한다.
6.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25조 【기능】

1.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 복지 ·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절 기구 및 조직

제26조 【학생총회】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연다.

제27조 【대의원회】

1. 학생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학생회장단
 - ② 각 학급 실 · 부실장
3.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4.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의 사업계획 · 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 ②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③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 ④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⑤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 ⑥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 · 개정 안 심의·의결
 - ⑦ 기타
5.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1. 학생회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3.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기획부: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 사항
 - ② 문화부: 학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
 - ④ 생활자치부: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길라잡이 담당.
 - ⑤ 환경부: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학습부: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등의 사항
 - ⑦ 홍보부: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⑧ 봉사부: 교내 외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 ⑨ 인권복지부: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4.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② 사업계획(안) 작성
 - ③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 ④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⑤ 기타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29조 【학년학생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년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 【학급자치회】

1. 기능
 - ① 학교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③ 학급 규칙 등의 제정
2.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제28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3.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실장, 학급 부실장 각 1명

- ② 각 부장 1명
 - ③ 제1호의 학급실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④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① 학급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학급실장, 학급 부실장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③ 학급 학생실장, 부실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월, 9월)에 실시한다. 단,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5. 학급 자치회의 운영
- ① 학급 자치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의 회원 1/5이상 또는 학급실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타 학급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 7~9명으로 선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선거

제32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33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 【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1.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①.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 ②.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1~2%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

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 ③.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35조 【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선거인의 1/2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학생회장단 선거는 해마다 실시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4. 대의원회의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1.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27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제5절 예산 및 결산

제37조 【예산편성 요구】

1.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8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절 규정의 제·개정

제39조 【규정의 재·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41조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장 자율동아리 활동

제42조 【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제43조 【동아리 승인 요건】 동아리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활동 목적과 과정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지도 교사를 두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3. 연간 활동 계획서를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동아리의 등록】

1. 각 동아리는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3월 초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 교사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아리 등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승인 받은 교내의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 【활동 및 관리】

1. 각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시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하여야 하며 학생 자치회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보고】 동아리 학생 대표는 다음 1, 2호의 사항을 매 학기 초에 창의적체험활동 담당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4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입 회원 명단.
2. 정기 모임 일시와 활동 내용.

3. 정기 모임 외의 특별 활동 내용.
4. 대외 행사 참가 등 대외활동

제47조 【동아리 해체 및 재등록】

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 ② 동아리 활동 내용이 불건전하고, 물의를 야기한 경우.
 - ③ 제44조에서 규정한 동아리 승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④ 동아리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⑤ 불법 활동으로 인해 지도 교사가 해체를 건의할 경우.
2.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년도에 재등록할 수 없다.

제7장 회복적 생활교육

제1절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성찰 교실 운영

제48조 【지도 방침】

1.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2.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성찰 교실 등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제49조 【단계별 지도 방법】 (학폭위 회부 사항 제외)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생활규정 중 준법, 근태, 약물, 퇴폐행위, 사이버범죄, 금품, 집단 행위 위반 시
 - 주의단계(지도교사): 2차까지 지도교사가 ‘주의’ 줌.
 - 1단계(지도교사, 담임): 회복적 성찰문, 서약서 작성, 학부모에게 문자 발송
 - 2단계(지도교사, 담임): 학부모 상담
 - 3단계(학년부장): 회복적 대화모임(담임, 학년부장, 문제행동학생, 문제행동학생부모)
 - 4단계(학년부, 학생부)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2. 학교 생활규정 중 다음과 같은 수업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상습적 수업 준비 미비 학생	수업에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온 경우 교과서나 활동지 등을 가져오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은 경우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껌, 과자 등을 먹는 행위 포함
* 수업을 거부한 학생	아프다고 습관적으로 보건실에 가는 경우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경우

- 1단계(교과교사) :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및 훈계
- 2단계(교과교사) :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 교사는 교실 안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등) 수업을 진행
- 3단계(학생부) : 교실 안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찰 교실로 이동시켜 성찰 교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함

- ① 성찰 교실 운영의 책임자는 교감으로 하고 전문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다.
- ② 교실에서 성찰 교실로의 학생 이동은 학교 관리자, 배움터 지킴이가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 체계를 만든다.
- ③ 성찰 교실은 상담실, 별도 교실, 교장실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④ 성찰 교실의 교육 활동은 다음과 같다.

- ㉠ 회복적 성찰문 쓰기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이때 학생이 자신이 겪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기의 생각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 성찰문을 바탕으로 한 기본 상담
- ㉢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 실시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글 읽기 등
- ㉣ 회복적 성찰문 해당 교사에게 전달, 필요시 교사의 답글을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중재
- ㉤ 전문 상담자와 연계 활동

- 4단계(학년부): 회복적 대화모임
 - 교과교사, 담임, 학년부장, 문제행동학생, 문제행동학생부모가 함께 모여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 5단계(학교 관리자): 학교 관리자 특별 면담
 - 학교 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 특별 면담
- 6단계(학년부, 학생안전정보부):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중대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 지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 회복적 성찰문의 예

회복적 성찰문	담임교사	학부모	학년부장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 행동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들)라고 생각하나요? (개인, 학교, 가정 차원에서)			
3.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4. 선생님과 주변(학부모 등)에서 본인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년 월 일 학번: () 이름: ()			

제2절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제50조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정보부장, 상담 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③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년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⑤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생활 지도

제51조 【안전 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 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3.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4. 등·하교 시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학교 안전 지킴이, 학생 자치회 및 봉사 활동 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교통 지도를 한다.

제52조 【교외 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경찰서, 시민 단체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53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 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는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서약하고 동반 지도에 노력한다. 필요할 경우 외부 연계 기관(WEE 센터)이 주관하는 학생·보호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생 지도에 협력한다.

제4절 시상

제54조 【종류】 표창은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으로 한다.

제55조 【시기】 표창은 정기 시상과 임시 시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 시상은 5월(청소년의 달)과 11월(학생의 달)에 실시한다.
2. 임시 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6조 【표창 대상】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는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시상한다.

제57조 【자격】 표창 대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위험한 상황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2.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3.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4.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5.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6. 기타 제61조 1, 2, 3, 4, 5항에 준하는 선행을 한 학생

제5절 징계

제58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제5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 ·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0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안전정보부, 교육복지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 · 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61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62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4.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제64조 【장애학생 대상 징계】

1.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2.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3.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65조 【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 기준】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준법	1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
	3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5	자동차,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고 등교하거나 폭주하는 행위			○	○
	6	징계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
수업	7	수업 진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9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10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학생		○	○	○
	11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	○	○
약물	1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에 동조(부추기거나 라이터 소지한 학생 포함.)한 학생	○	○	○	
	14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퇴폐 행위	15	도박을 한 학생		○	○	○
	16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7	음란 서적 및 동영상 소지하거나 유포한 학생	○	○	○	○
사이버 범죄	18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한 학생	○	○	○	○
	19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관리한 학생		○	○	○
	20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각에 연관된 학생			○	○
	2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연관된 학생			○	○

금품	22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거나 갈취한 학생	○	○	○	○
기타	23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24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동일 징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				
	25	징계를 받고도 행동에 개선이 없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6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처리한다.				

제6장 규정 제·개정 절차

제6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 · 개정 하기 위하여 「남원용성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6.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 ②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6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